

중국의 강제인증제도(1)

- CCC Mark를 중심으로 -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TRA

< 중국의 CCC 마크 제도 >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밑에서 세계 각 나라의 무역장벽(trade barriers)이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자국민을 위한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이 지구상의 120여개 국가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강제인증 또는 임의인증의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은 물론 보건, 위생 및 환경분야와 더불어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제조물책임(PL)과 같이 병행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인증제도를 각국의 제조업체가 합법적인 면책수단으로 원용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각 국가에서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시장의 변화와 추세에 부응해서 2001년 12월 11일자로 WTO에 가입하고 WTO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이행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자유 시장경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의 수요와 욕구에 적극 호응하고 자국경제와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안전인증 및 이와 관련된 제도를 총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관리체계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중국의 총괄적인 규제체제를 전면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전기제품의 강제인증제도로써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 제품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1년 12월 3일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인 CCC마크로 통합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위하여 2003년 4월 30일까지는 현행 CCEE마크와 CCIB마크, 그리고 새로운 CCC마크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는 CCC마크만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이와 같은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의 강제시행이 박두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투자진출을 모색하는 여러 관련 업체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심있는 그리고 현재 교역중인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중국의 CCC마크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한·중간의 CCC품목교역동향 및 우리의 대응대책을 여기에 정리해서 2회에 걸쳐 게재 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주요내용

1) 개요

도입배경과 통합내용

- 복잡한 인증제도 : 국내산품, 수입품과 수출품을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WTO

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됨.

- WTO가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통합하기로 결정함
- 통합 내용

〈 국내제품 〉	〈 수입제품 〉	〈 수출제품 〉
-국가품질기술감독국 (CSBTS)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CCEE(상품안전인증) 가전제품, 전공부품, 설비, 조명설비 등 104개 품목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설비 등 107개 품목	-CIQ(수출안전인증) 주로 전기제품, 완구, 화장품 등 76개 품목

↓

〈 국내제품, 수입품, 수출품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기존대상품목 : 138개 중 16개 제외, 10개 추가
-CCC마크(중국강제인증마크)

2) 중심내용

(1) CCC 강제인증제도 관련규정체계

- 법률, 법규
 - 중국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인증관리 조례
- 규칙 : 강제성 상품인증관리규정
- 규범 문헌
 -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관리 방법
 - 제1 강제성 상품인증실시상품 목록
 - 강제성 상품의 인증실시규칙(47부)
 - 강제성 상품인증비용 규정
 -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실시 일정에 관한 규정

(2) 조직 체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국가의 관련 법률,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과 공포
-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강제인증품목에 관한 관리개발 및 인증마크 결정 등
- 인증기관(DCBs) : 9개 기관 ⇒ CNCA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강제안전인증업무의 시행을 주관

- 시험기관 : 68개 기관 ⇒ 지역별/제품별로 분리하여 시험업무 분할 시행 주관

3) 시행시기

2002년 5월 1일부터 자국 생산 및 수출입 공산품에 대해 'CCC' 마크로 통합 적용한다.

- 다만,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국내제품(CCEE마크)와 수입제품(CCIB마크)와 같이 병행 시행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는 CCC마크만 사용가능하다. 전선 및 케이블,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소방설비 등 19분류 132개 품목(기존대상품목 138개중 16개 제외, 10개 추가)
- 추가품목(10개) : 용접기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호스, 소방용분수장비
- 19분류 132개 품목 목록

4) 적용품목

번호	분류(영문)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Electrical wires and cables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6
3	저압형 전기장비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4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5	전동공구	Electric tools	16
6	전기용접기	Welding machines	15
7	생활용 전기제품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Audio and video apparatus(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omobiles)	16
9	정보기술장비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IT)	12
10	조명장비	Lighting apparatus(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Tel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Motor vehicles and Safety Parts	4
13	자동차 타이어	Motor vehicle Tyres	3
14	안전용 유리	Safety Glasses	3
15	농기계 제품	Agricultural Machinery	1
16	라텍스 제품	Latex Products	1
17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7
18	소방기기	Fire Fighting Equipment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1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